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원우회 회칙

1993. 5. 11 제정

1997. 3. 11 개정

2002. 3. 30 개정

2005. 9. 1 개정

2005. 12. 6 개정

2020. 11. 30 개정

2024. 11. 18 전면 개정

2025. 05. 0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일관된 자치활동을 통해 건전한 면학풍토를 조성하고 원우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세미나, 연구발표회, 학술지발간 등 제반 학술 진흥 활동
2.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원활한 교류를 위한 교내외 봉사활동, 경조사 축하, 위문활동 등. 제반사업
3. 본회 및 회원의 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한 일체의 대내외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4 조(회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이루어진다.
2. 정회원은 석사과정과 연구과정의 재학생으로 등록된 자이다.
3.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된 자이다.
4. 정회원은 이 회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5.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관할 수 있고 발언권을 갖는다.

6. 정회원은 개강 후 2 주 이내에 원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 명예회원은 자의로 본회 발전을 위한 기부금이나 찬조금을 낼 수 있다.
8. 휴학중인 회원과 회비 미납회원은 본 조 제 4 항의 권리가 기간만큼 정지된다.
9.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 5 조(회원의 혜택)

1. 본 회의 회원은 해당 학기 원우회가 주관하는 학사 일정(행사) 간 선별적 수혜를 받는다
2. 수혜에 관한 내용은 해당 학기 원우회가 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3. 단,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수혜 등은 해당 시기의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 6 조(회기) 본 회의 회기는 전기와 후기 각 1 월 1 일에서 6 월 30 일까지와 7 월 1 일에서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7 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본교 내에 둔다. 단,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국을 서울시 내에 둘 수 있다.

제 2 장 원우회의 기구

제 8 조(회의) 본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 고문회를 둔다.

제 9 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회가 부의 한 안건의 의결
4. 회장의 해임에 관한 의결
5. 기타 회원 과반수 이상 또는 고문회에서 제안한 안건의 의결

제 10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명예회원에게는 참관자로서의 자격과 발언권을 줄 수 있다.

제 11 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학기 종강 전에 개최한다. (단, 결산 및 감사 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공고하는 것으로 정기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회원의 1/4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4. 모든 총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주일전에 본회가 사용 중인 채널(원우회가 운영 중인 오픈채팅방, 페이스북 그룹 등의 웹페이지)에 의제와 장소, 시간을 명시하여 공고한다.(단, 필요 시 서면으로 공고한다.)

제 12 조(총회의 의결방법 및 의사진행)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3. 모든 안건은 제안자 이외에 1 인 이상의 동의와 1 인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의제로 심의할 수있다.

제 13 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단 및 사무총국 과 각국 국, 차장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예산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회비조성
4. 기타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 14 조(임원회 소집 및 의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소집하되 회장단 회의 및 간부회의(각국 국장)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한 의결은 반드시 전체 임원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15 조(고문회)

1. 고문회는 회장이 위촉한 합계 4 인 이상의 고문/자문/감사 등으로 구성한다.
2. 고문회는 회장의 자문기구로서 주요안건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회장은 이를 청취, 본 회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3. 고문회는 감사 역의 결산 및 감사 행위에 대해 상호 감시를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 3 장 임원(집행부)

제 16 조(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회(집행부)를 둔다.

고문(회) : 고문/자문/감사로 구성 된 4 인 이상

회장(단) : 회장 1 명 - 부회장 : 약간 명

(임원회 구성 예시)

- 사무국 : 국장 1 명, 차장 : 약간 명

- 재무국 : 국장 1 명, 차장 : 약간 명

- 기획국 : 국장 1 명, 차장 : 약간 명

- 행사국 : 국장 1 명, 차장 : 약간 명

- 대외협력국 : 국장 1 명, 차장 : 약간 명

- 홍보국 : 국장 1 명, 차장 : 약간 명

각 조직(국)에 대한 인원 구성은 당해 학기 회장(단)에게 일체 권한이 있으며 상기 외 기타 조직에 관해서는 회장(단)이 당해 학기에 필요한 조직으로 추가 및 보완하여 구성한다.

제 17 조(임원의 선출과 임명)

1. 회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제 25 조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지명으로 회장단을 함께 구성하며, 그 외 임원은 회장단이 동의를 통해 임명한다.
3. 원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한하여 부회장 지명 및 임원 임명 가능하다.

제 18 조(임원의 임기)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제 6 조 회기 개시와 함께 시작하여 회기 종료 시 종료된다.

제 19 조(회장의 자격 및 권한)

1. 자격

- ① 본 회는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는 회장 1 인을 둔다.
- ②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2 학기 이상 등록하여 수학 중인 정회원으로서 학기 중 휴학계획이 없어야 한다.
- ③ 출석, 성적 등 타 회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정회원 1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권한

- ① 회장은 총회 및 임시총회,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부회장을 지명하여 회장단을 구성하고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임원을 임명한다.
- ③ 회장은 본 회의 발전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단, 고문회 및 회장단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이 해외출장, 신병, 기타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하되 그 기간이 2 개월 이상 길어질 경우는 총회에 사의를 표해야 하고 총회는 즉시 신임 회장을 선출하여 새 집행부를 구성케 한다.

제 20 조(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당해 본 회의 필요에 따라 2 인까지 둘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국의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한다.

제 21 조(임원회의 역할) 임원회의 역할은 매 학기 임원회의 구성에 따라 역할에 대한 분장 및 직책별 업무 사항은 다를 수 있으나 하기의 내용을 기준으로 각 부처가 업무를 나누어 수행한다.

1. 본 회의 주요 사업을 기획, 주관하고 각국의 업무를 통합, 조정하며 본 회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업무와 상호회 등을 총괄한다.
2. 본 회의 각종 회의의 기록, 문서작성 및 수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미대원 내의 각 과정 및 교우와의 유대강화와 공동사업 등을 기획, 담당하고 본교 내외의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과 본 회 및 미대원의 대외적인 위상제고를 위한 업무를 주관한다.
4. 본 회의 문화, 체육, 친선에 관한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다.
5. 본 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학교 내의 유익한 정보 등을 온라인상에서 운영, 원우 개개인의 원활한 학업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며 나아가 온라인상에서 회원 상호간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성화와 학교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6. 회장단을 포함한 각국의 업무를 지원하고,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 한다.
7. 본 회의 학문적 발전과 면학풍토 조성을 위한 각종 학술회의, 세미나, 토론회 등을 주관하며 학술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8. 본 회의 의결사항, 학교 내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결정사항 및 행사 등의 홍보활동과 본 회와 원우 및 미대원의 발전을 위한 각종 대외적 홍보활동을 주관한다.

상기 기재 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학기 회장단의 공약이나 의지에 따라 일부 추가되거나 보완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제 22 조(특별위원회) 회장은 본 회의 특별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감 사

제 23 조(인원구성 및 선출)

1. 본회는 최소 1인의 감사를 둔다.
2. 제 15 조 1항과 같이 회장이 위촉하여 선출한다.

제 24 조(권한 및 업무)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수시 및 정기적 감사(중간 보고, 결산 보고)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선거관리

제 25 조(선거관리위원회) 본 회칙에 따른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회장은 공정한 차기 회장의 선출을 위해 원우회 소속이 아닌 회원들 중 덕망 있는 자로 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제 26 조(선거일정 수립)

1.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당해연도 학사 계획에 따른 등교일(수업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2. 선거 일정의 경우 종강 최소 2주 전까지 시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 학기 회장(단)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3.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등교일 중 선거일자를 일부 축소할 수 있다. (등교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제 27 조(공고, 입후보, 선출, 공포)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15일 전까지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게시판을 통해 공고한다.
2.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 19 조 1항과 같이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하며 위원회가 지정하는 마감일 전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3.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득표자를 상대로 하는 2차 투표에서 다 득표자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확정되는 대로 이를 공포하고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 28 조(선거의 방식)

1.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제 26 조에 따른 일정에 맞춰 **오프라인 무기명 직접 투표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되지 않는 시기에는 온라인 투표를 한시적으로 예외 허용한다.
3. 단, 선거 방식 온/오프라인 중 단 한가지로만 이뤄져야 하며 동시 병행하여 진행하지 않는다.

제 29 조(온라인 투표)

1. 온라인 투표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령으로 고시하고 있는 기본 선거 원칙 등을 참고하여 진행한다.
2. 온라인 투표에 쓰이는 전자 선거 도구의 경우, 반드시 본인 인증이 기능이 탑재된 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간 외부 인원이나 선거권이 없는 인원이 투표를 하지 않도록 선거인 대조와 개인정보 관리(선거권자 기본 정보 및 학적 정보, 회비 납부 등)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30 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원우회비, 특별회비,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 31 조(재정입출금 및 관리)

1. 모든 입출금은 회장 감독 하에 해당 학기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2. 모든 지출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예산을 측정하여 집행하되 회기별 2 회 이상 감사를 받아 온오프라인 수단을 통해 공개한다.
3. 재정관리는 원칙적으로 통장을 통해 해당 학기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며 유실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제 32 조(원우회비 납부)

1. 원우회비는 매 학기 등록 시 납부(최대 5 회)할 수 있으며, 최초 1 회 납부로 재학 중 정회원의 권한 및 혜택이 적용 된다.
2. 원우회비 다 회차 납부에 대한 부분은 개인의 선택이며, 납부 이후에는 중도 반환 등은 불가하다.

제 33 조(배상책임)

1. 회장과 감사가 본 회칙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본 회의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우회 회비를 임원회의 의결 없이 사적용도 사용 또는 각종 행사시 독단적으로 집행하여 원우회에 피해를 유발시켰을 시 즉시 일시변상하여야 한다.

3. 또한, 원우회 운영에 있어 원우회 회비의 횡령 및 유용, 배임, 원우회 명예훼손 등의 잘못으로 신의성실을 저버린 경우 총회를 통해 제지 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직무의 중지 및 원우회에서 영구히 제명한다.

4. 전 항의 행위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일 때는 그 의결에 찬성한 임원도 동일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7 장 포상 및 징계

제 34 조(포상) 회원 중 본 회 발전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외적으로 두드러진 선행이나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본 회의 위상을 높인 회원에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하여 그 선행과 업적을 기린다.

제 35 조(크림슨아너)

1. 학기 말 임기 종료 전 당해 학기 현금찬조금액 500,000 원 이상 찬조 원우에 대해 '크림슨아너'로 감사를 표시한다.

2. 원우회에서는 매 학기 종료 이전에 '크림슨아너'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개적으로 게시, 대상자에게 수여하도록 한다.

3. 단, '크림슨아너'의 부여 조건이나 상품 구성 등은 매학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36 조(징계) 회원 중 고의적으로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화합을 해치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자격박탈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 8 장 경조사

제 37 조(경조사)

1. 원우회의 정회원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기준으로 법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직계가족 범위의 경조사의 경우에 원우회 경조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경조사 물품 지원사항

- 경하기(결혼)

- 근조기(장례)

동일 일시에 인원이 중복될 경우 우선 신청자가 받게 되며 후순위는 화환으로 대체한다.

3. 단, 본인과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 외에도 원우의 요청에 따라 예외의 경우를 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승인은 회장의 권한으로 둔다.

4. 원우회 정회원이 아닌 미디어대학원 구성원의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할 시에는 사용할 수 있다.

5. 경조사기의 경우 제휴업체에서 보관하며 설치 및 배송비를 원우회에서 부담한다.

6. 해당 업무는 당 학기 해당 업무를 맡은 임원회 조직에서 수행한다.

7.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1 년 이내 1 회에 한하여 경조사 지원을 제공한다. 수료생의 경우, 수료일로부터 2 년 이내 1 회에 한하여 경조사 지원을 제공하되, 수료 중 경조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졸업 후 추가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적자는 경조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8. 이후 졸업자의 경조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은 당 대학원 교우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 9 장 회칙개정

제 38 조(발의) 회칙개정은 회장 또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제 39 조(의결) 회칙개정은 재적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본회의 지대한 발전을 위해 회칙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선 의결 할 수 있다. 단, 회장단 및 임원회에서 2/3 이상 찬성할 경우 의결된다.

선 의결 후 당해연도 정기총회 시 회칙변경의 타당성이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 없을 경우 회칙개정은 무효로 한다.

부칙 (1993.5.11) 본 회칙은 1993.5.11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1997.3.11) 본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30) 본 회칙은 2002.3.30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1) 본 회칙은 2005.9.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6) 본 회칙은 2005.12.6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30) 본 회칙은 2020.11.30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1.18) 본 회칙은 2024.12.12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5.08) 본 회칙은 2025.06.12 일부터 시행한다.